

北韓의 文法規範化(形態論 分野)의 變遷過程과 그 特性*

李 承 旭

- I. 머리말
- II. 「조선어문법 1 : 어음론·형태론」
- III. 「조선문화어문법규범」

I. 머리말

이 연구는 北韓이 言語規範化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文法, 특히 形態論 分野의 研究와 규범화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그들이 제시한 기본적인 原理와 體系를 살펴 보는 한편, 變遷過程을 추적하여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성격을 기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北韓의 初期文法書는 1949년 '朝鮮語文研究會'編의 「조선어문법」¹⁾이 있으며, 이것은 당시 北韓의 言語理論이나 言語政策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던 金枬奉의 주장이 전적으로 반영된 「조선어 신철자법」(1948)²⁾의 해설서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 지문에는 이른 바 신자모

* 본 연구는 1993년도 교육부 지역연구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것임.

1) 朝鮮語文研究會에 대하여는 李承旭 '北韓의 國語研究와 語文政策', 「동아연구」 제 14호 1988. pp.50 - 51에서 가능한 자료에 따라 기술했으며, 「조선어문법」은 조선어문연구회편(평양) 조선어문연구회 간행 1949. 400p로서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와 全北大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다.

2) 李承旭 : 「北韓 綴字法의 體系와 變遷」, 「동아연구」, 제 22호. 1991. p.105.

6字가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正論으로 널리 規範化 되는 段階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미루어 당시 그들 내부에는 文法體系와 綴字法 등에 대한 異論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더군다나 그 뒤를 이어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 추이들이 이러한 推定을 뒷받침해 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갈등의 혼돈이 마침내 절정에 이르러 정치적 인 문제와 맞물린 權力鬭爭의 樣相을 띠고 표출된 것이 바로 1958년의 金料奉肅淸³⁾이었으며, 이로써 金料奉의 지론에 이끌려 온 國語問題의 기반이 무너졌고, 그것은 뒤이어 1964년에 나온 이론바 김일성의 1.3 교시를 통해 혹독한 비판과 함께 공식화 된다.

金料奉肅淸이라는 거센 파동이 지나고 1.3교시가 나오는 과정, 즉 1960년에 비로소 北韓文法の 基礎를 이룬 「조선어문법 1 : 어음론·형태론」이 과학원 출판사를 통하여 과학원 언어연구소에서 刊行되기에 이른다.

「조선어문법 1」은 그간에 거둔 文法研究의 성과와 이론을 결집하여 집대성한 文法書로서 1963년의 「조선어문법 2. 문장론」과 함께 최초로 그들의 학문적인 성향과 이론적인 體系가 공식화된 것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다음에 이어 전개되는 文法研究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이 「조선어문법 1」은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경향을 基礎에 깔고 있어서 기능적인 規範文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미완결의 문제까지도 제기함으로써 규범화를 위한 前段階에서 요구되는 이론체계를 정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앞으로 文法の 규범화를 하기 위하여 드러난 懸案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體系의 基礎를 닦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3) 李承旭 : '北韓의 國語研究와 語文政策' 『동아연구』 제 14호 1988. pp.62 - 63

그러므로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北韓의 文法형성과 변화의 출발점을 긋는 의미를 가져 주목할 대상이 되지만, 그후 1976년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편,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간행의 「조선문화어문법규범」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변화과정의 脈絡에서 볼 때 이것이 미쳤을 영향은 가히 史的인 意味를 가진다 하겠다.

「조선문화어문법규범」에 이르면 前者와는 아주 다른 기술원칙이 적용되어 이론적인 해석이나 설명은 배제된 채 文法을 言語의 통신적 기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규정하여 명령적이고 교도적인 규범적 성격을 강조하게 된다. 여기까지 오는데는 적지 않은 과정이 있었을 것이 想定되며, 특히 1970년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간행의 「조선어문법」과 1972년의 「문화어문법규범」(초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걸러지고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 바로 「조선 문화어 문법규범」이었다. 따라서 이 文法規範은 그동안 北韓의 文法研究가 거둔 성과를 모두 모아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 낸 그들의 文法을 대표하는 것이라 하겠다.

北韓의 文法規範化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 주된 대상으로 「조선어문법 1」(1960)과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⁴⁾을 선택하게 된 데는, 위에서 살폈듯이 이 두 文法書間에는 물론 일정한 시기를 분할적 단위로 볼 때의 일이 되겠지만 '출발'과 '귀착'의 관계에 비할 만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한편 이 논문은, 이 두 文法書가 각기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완결본으로 각각에 대한 分析과 비판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아래서 일차적으로는 「문법」(1960)과 「규범」(1976)을 발달의 이어지는 관계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이들의 독자적인 體系性을 把握하는 작업이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들의 體系에다가 변화의 의미를 줌으로써 시간적인 垂直線上의 전개로 파악하는 작업의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특기해 둘 일은, 우리 국어의 南과 北의 문법에서 공통적으로 一致

4) 앞으로 이들을 略稱하여 「문법」(1960)과 「규범」(1976)으로 부르기로 한다.

하게 기술되고 있는 부분은 논외로 하겠으며, 北韓의 文法에서 採擇한 특징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II. 「조선어문법 1 : 어음론 · 형태론」⁵⁾

(1) 形態論의 構成

形態論은 文法의 有意的 最少單位가 되는 形態素를 기본단위로 확정하고, 그들이 어떻게 單語를 이루는가하는 單語내부의 문제를 다루며, 따라서 形態論의 최대단위는 單語가 된다.

이에 대하여 「문법」(1960)은 '文法은 單語의 형태가 이루어짐에 있어서와 單語들의 결합에 작용하는 規則의 總體'라는 규정아래서 그 중 '形態論은 單語에 관한 문법적 이론'을 연구한다하고 다시 '單語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수법들을 연구'하는 分野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에 따라 形態論을 單語와 관련된 모든 文法의 문제를 망라하는 범위로 잡는 한편, 그 主對象으로는 '單語들의 형태들이 이루어지는 수법들에 관한 이론, 즉 형태조성의 이론'과 함께 '單語가 이루어지는 수법들에 관한 이론, 즉 單語造成의 이론'⁶⁾을 포함한다 하여 單語의 屈折과 造語의 두가지 分野를 形態論의 고유분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의 문제를 品詞別로 서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령 名詞를 서술하고 있는 주된 내용의 편성은 '名詞의 文法的 形態들'과 '名詞의 單語造成'을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구성은 동사, 형용사, 부사

5) 이 책은 1960년에 과학원 언어문화연구소 언어학연구실편으로 과학원출판사에서 간행했으며, 이것을 1961년에 동경학우서방에서 번인 출판한 바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대상은 후자의 것이다.

6) 「조선어문법 1 : 어음론 · 형태론」, 과학원 언어문화연구소편 동경학우서방간행, 1961, p.118

등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자세한 分析은 해당 항목에서 논의되겠지만, 우선 '名詞의 文法的 형태들'은 形態論의 고유영역이어서 다른 異論이 없겠지만 '名詞의 單語造成'에다가 앞의 것과 같은 비중을 준 데에는 주목해 볼 만하다

(2) 형태와 형태부

北韓文法の 용어법에서 '형태'와 '형태부'는 우리가 쓰는 용어의 通念과는 다르다. 이들 용어는 北韓文法の 일반적인 용어로 되어 있으나 그 개념의 원론적인 규정은 직접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여기서는 그것들이 쓰인 前後의 脈絡을 살핌으로써 간접으로나마 그 形態論적 개념을 밝혀 둔다.

우선 앞의 인용에서 '單語들의 형태들이 이루어지는 수법'이라는 文脈에서 '형태'는 다시 '單語의 형태는 그 單語와 관련된 어떤 文法的 意味를 나타내는 바, 이때 그 單語의 어휘적 의미는 계속 그대로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집-이> <집-의> <집-을> <집-에> 등등은 동일한 單語의 여러 형태들이며, <심-소> <심-자> <심-었다> <심-졌다> <심-고> <심-으면> <심-은> <심-던> 등등도 동일한 單語의 여러 형태들이다.'⁷⁾의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 體言이나 용언이 일정한 語形變化, 즉 屈折을 경험하여 결과된 각각의 變化語形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서 한 單語는 일정한 문법적 意味를 실현하기 위한 變化어형을 가지며, 그 變化어형들이 곧 한 單語의 형태라는 것이다. 문법적 意味를 실현하기 위한 構成은 '어휘적의미 + 첨가되는 요소'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構成體 하나하나가 單語의 형태가 되는 셈이다. 그리하여 '집이, 집의, 집을.... / 심소, 심자, 심었다....'들은 각각 '집'과 '심-'이라는 單語의 각기 다른 文法的 意味를 나타내고 있는 형태가

7) 「문법」(1960) p.118

된다. 이것은 單語의 文法的인 屈折語形을 일정한 기준으로 分析하여 抽出한 단위요소를 형태 또는 형태소로 기술하는 構造概念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그리하여 특기할 사실은 北韓의 形態論에서는 單語를 形態論的으로 分析하여 얻어지는 기본단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形態素라는 용어개념은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北韓文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토'를 形態範疇로 도입하게 됨으로써 빚어진 결과이며, 따라서 '토'의 概念規定에는 많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고, 대체로 屈折形態素에 對應한다. 그렇기 때문에 單語의 형태는 分析이 가능하며, 分析에 의해 析出되는 각 부분을 형태부라 하고 單語의 구분은 '의미를 가지는 최소의 단위인 형태부'⁸⁾로 나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형태부의 종류로는 語根, 接頭辭, 接尾辭 그리고 토를 들고 있다. 語根은 모든 동족어에 공통적이며 가장 작은 有意味의 부분으로서 言語行爲에서 많은 경우 형태부와 함께 특히 토와 함께 쓰이는 형태부이며, 接頭辭는 語根앞에 오는 형태부, 接尾辭는 語根뒤, 토앞에 오는 형태부 그리고 토는 單語의 문법적 형태를 조성하는 형태부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單語는 단일한 형태부로 된 단일 형태의 것도 있으나, 많은 경우 두개 이상의 형태부를 가지고 구성되는 많은 單語형태를 가진다고 하겠다.

형태와 형태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뒤의 해당항에서 있을 것이며 여기서는 이 논의를 위한 基本概念을 定立하는데 그쳐 둔다.

(3) 단어의 구성

單語構成의 형태부를 語根, 接頭辭, 接尾辭 그리고 토로 구분한다. 어근에 대한 규정은 일반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그것이 言語行

8) 「문법」(1960) p.119

爲로 나타날 때 혼히는 형태부를 취하며 특히 토와 함께 쓰인다고 한다.

우리는 北韓文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토의 概念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접두사는 어근앞에 붙어 單語造成的의 역할만을 하며, 접미사는 어근뒤, 토앞에 오는 형태부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다시 접미사와 토를 다른 형태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접미사를 다시 單語造成的의 접미사와 形態造成的의 접미사로 나누고

1) 單語造成的의 접미사는

- i) 品詞轉成的의 역할을 하는 접미사(-口,-기,-개,-지,-리,-히,-답,-롭....)
- ii) 어근에 보충적인 의미를 첨가하여 주는 접미사(-군,-쟁이,-뜨리, -치,-다탕....)

로 나누었다. 그리고

2) 형태조성의 접미사는 '어근에 이 접미사를 붙임으로써 單語의 文法的 意味가 표현된다.'(p.122)고 하면서

- i) 상의 의미(사역 또는 피동<-이,-히,-리,-기>)
- ii) 존칭의 의미(-시)
- iii) 시칭의 의미(-았,-았었,-겠)
- iv) 體言形을 만드는 접미사(-口,-기,-지)

를 여기에 배당하였다. 이 가운데 형태조성의 접미사에 대해서는 「문법」(1960)이 아직도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부분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조선어에서 文法的 형태표현이 분석적 수법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p.130) 즉, 사동.피동을 屈折로 보느냐 派生的 範疇로 보느냐하는 문제와 先語末語尾類의 形態論的 분석기준 그리고 動名詞形을 이루는 접미사를 어떻게 처리하는냐하는 문제등에 대하여 비록 여기서는 暫定的으로 이들을 하나의 형태범주로 묶고 있으나 이들 사이에는 理論과

現實에 있어 두루 矛盾되어 하나로 묶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異論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 시기의 文法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지 주목해 봐야 할 점이다.

다음은 語根과 구별하여 語幹을 두고 있는데 접두사에서부터 토의 직전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을 語幹이라 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을 최대 로 확대해 보면 「접두사 + 어근 + 형태조성적접미사」의 형태부 구성이 된다. 이 가운데 형태조성적 접미사를 다시 전개하면 그것은 「접두사 + 어근 + 상의 접미사 + 존칭의 접미사 + 시칭의 접미사 + 體言形의 접미사」(깃뱃히시었음)가 되어 우리의 어간개념과 분석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

토는 '형태조성의 접미사와 마찬가지로 單語의 文法的 형태를 조성하는 형태부'(p.124)라하여 接尾法에 쓰이는 일반적인 접미사와 같다는 전체적인 정의를 내렸다. 단, 토를 제외한 여타의 형태조성의 접미사와 다른 점은, 토는 그것이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가 單語의 문장론적 기능과 관련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즉, 토는 문장 또는 單語結句에 있어 單語가 連繫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태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토는 單語의 형태구성에 있어 最終端의 語末部位에 놓이는 語末 또는 文末語尾에 상당하며, 單語 또는 문장의 일정한 성분을 규정함으로써 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형태를

- 1) 體言의 격형태
- 2) 용언의 종결형
- 3) 용언의 접속형
- 4) 용언의 규정형

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토에는 '제로접미사'와 함께 '제로토'를 인정하여 아무런 토가 없는 경우에도 것처럼 표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單語의 한 文法的 형태를 다른 文法的 형태와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單語造成과 形態造成的의 기본원리를 보았다. 특히 형태조성에 있어서 文法的 형태가 주로 형태조성어의 접미사와 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접미사'와 '토'를 별도의 '형태부'로 설정하게 되었고 따라서 先語末語尾(접미사)와 語末語尾(토)를 다른 層位의 형태소로 규정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가운데서도 토 즉 語末語尾는 形態論적으로 어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기능은 어간을 넘어서서 때로는 單語들의 결합 또는 문장 전체와도 연계되며, 이미 완결된 單語나 單語들의 결합 혹은 문장에 다시 토가 결합될 수 있는 점등이 屈折語의 語尾와는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單語의 형태조성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 單語의 형태조성

「어간 + 토」

語幹의 형태조성

「어근 + 형태조성접미사」

형태조성접미사

ㄱ) 상표시 접미사

ㄴ) 존칭표시 접미사

ㄷ) 시칭표시 접미사

ㄹ) 體言형을 만드는 접미사

예) 「어근 + 상 + 존칭 + 시칭 + 체언형 + 토」

밖 - 히 - 시 - 었 - 음 - 으로

(4) 품 사

品詞란 言語의 語彙構成에서 어휘적 의미의 성격, 文法的 範疇의

구성, 문장론적 기능 그리고 單語조성의 유형등에 나타나는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가려낸 것을 하나로 묶은 單語의 부류라고 했다. 따라서 品詞의 분류기준은

- 1) 單語의 어휘적 의미의 성격이 되며, 이에 따라 名詞는 대상의 표시, 動詞는 과정의 표시, 형용사는 성질의 표시 등으로 특징지워 묶을 수 있고,
- 2) 다음은 각 品詞에 고유한 文法的 範疇의 體系와 이와 관련된 형태조성(어형변화, 굴절)의 體系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령 격의 文法的 範疇를 가지고 공용하는 單語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 계층, 식, 법 시칭, 존칭, 상등의 文法的 範疇를 가지고 活用하는 單語의 부류가 있어 서로 다른 品詞로 분류하게 된다.
- 3) 문장론적 기능의 측면, 즉 각 單語의 부류는 제각기 문장을 구성하는데 있어 그 성분이 일정해 있어서 品詞分類에 유효하며, 다음은
- 4) 單語造成法上의 體系로서 가령 '-口, -기, -개, -쟁이, -질'과 같은 접미사를 취하는 單語의 부류와 '-거리-, -대-, -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롭-, -스럽-, -답-'등을 취하는 單語의 부류가 서로 달라 이 역시 品詞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문법」(1960)은 ①명사 ②수사 ③대명사 ④동사 ⑤형용사 ⑥관형사 ⑦부사 ⑧감동사등 8品詞로 分類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분류에 대하여 '朝鮮語文法體系에서 品詞를 몇개로 갈라 놓을 것인가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제기되고서도 아직까지 종결적 해결을 보지 못한 문제에 속한다.'(p.129)는 留保的인 消極性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연구에 따라서는 이 體系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으로 주목해 둘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법」(1960)은 이례적으로 국어의 品詞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열거하고 있어서 눈길을 끄는 바, 이것을 통하여 당시의 文法研究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속 사정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문법」(1960)이 학문적인 이론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도 할 수 있거니와, 다음 시기의 「규범」(1976)의 것과 對比됨으로써 '과연 그간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하는 의문을 풀 수 있는 근거가 되겠기에 제기한 문제들을 인용해 둔다.

1. 조선어의 특성에 비추어 <토>를 하나의 보조적 品詞로 설정할 것이 아닌가?
2. 또는 <토>가운데서 <도움토>만을 하나의 보조적 品詞로 설정할 것이 아닌가?
3. 動詞와 형용사를 각각 다른 두개의 品詞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品詞의 두개 종류로 볼 것이 아닌가?
4. 접속사 및 후치사를 조선어에서도 品詞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5. 관형사를 따로 品詞로 갈라 놓을 것이 아니라, 접두사에 합치거나 또는 형용사의 한 종류로 볼 것이 아닌가?
6. 의성·의태어를 따로 하나의 品詞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p.129>

이와같은 品詞設定의 문제와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세부의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기하였다.

1. 술어로 되는 名詞(예: 사람이다)에 나타나는 <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할 것인가?

2. <불후의> <불요불굴의> 등의 單語를 관형사에 넣어야 할 것이 아닌가?
3. <국제문제> <원시사회> <조기작물> <가내공업> <여류작가> 등에서 <국제> <원시> <조기> <가내> <여류> 등을 名詞에 소속시킬 것인가?, 관형사에 소속시킬 것인가? 또는 어떤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4. <영웅적> <선진적> <추상적> 등 <-적>이 붙은 單語를 名詞로 볼 것인가? 형용사로 볼 것인가? 또는 어떤 다른 것으로 볼 것인가?
5. <있다> <없다> 등의 單語를 動詞에 넣을 것인가?, 형용사에 넣을 것인가? 또는 어떤 새로운 品詞를 설정할 것인가?
<pp.129 - 130>

다음으로 각 품사의 文法的 範疇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첨예한 문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1. 名詞의 文法的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2. 動詞의 태, 양태성의 範疇를 설정할 것인가?
3. 형용사에도 상의 範疇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4. 조선어에서 文法的 형태표현의 분석적 수법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5. 조선어에서 토와 합성토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할 것인가?
6. 조선어의 특성에 알맞는 조선어 單語造成의 수법들을 설정할 것이 아닌가?
7. 조선어에서 單語와 합성어 및 공고한 單語結合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와같이 조선어 形態論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이론적 및

실천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이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와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문법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욱 정밀하고 과학적인 연구들에 의해서 더욱 완비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일정한 體系에 의하여 조선어의 文法構造를 서술하기로 한다. <p.130>고 하였다.

여기서는 「문법」(1960)의 이와같은 정리된 입장을 토대로 하여 제기된 문제의 사안들을 선별적으로 가려 「문법」(1960)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 「규범」(1976)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피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한다.

(5) 미결사항으로 제기된 문제

1) '토'에 대하여

토에 대한 문제제기는 '토'를 補助的 品詞로 설정할 것인가?하는 것과 토 가운데서 '도움토'만을 補助的 品詞로 설정할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品詞의 文法的 範疇과 관련하여 토와 합성토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물론 「문법」(1960)은 어떠한 토도 品詞範疇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토는 單語의 文法的 형태라 함으로써 傳統文法에서 助詞로 分類하고 있는 品詞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體言토와 用言토를 다른 體系로 구별은 하지만 그것이 놓이는 자리, 즉 어말과 문말에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 모든 '형태부'(형태소)를 總稱하여 '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토는 그 分布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우선 單語의 文法的 형태를 이루는 두 軸이라 할 수 있는 體言의 어형변화, 曲用과 용언의 어형변화, 活用 體系에 나타나는 토의 分布를 概括하면 다음과 같다.

(가) 名詞의 형태

1. 격 토

a. ㄱ) 주격토 : <가(이)>

ㄴ) 속격토 : <의>

ㄷ) 대격토 : <를(을)>

ㄹ) 여-위격토 : <에> <에게> <에서>

ㅁ) 조격토 : <로(으로)>

ㅂ) 구격토 : <와(과)>

ㅅ) 호격토 : <야(아)> <여(이여)>

ㅇ) 절대격토 : 아무런 격토의 가짐이 없이 名詞의 어간과 동일한 어음적 외피로서 이루어진 형태.

b. 합성토 : 예가,예의,예를,예로,예와 / 예게가,예게의,예게를,예게로,예게와 / 예서가,예서의,예서를,예서로,예서와 / 로가,로의,로를,로와 / 와가,와의,와를

2. 名詞의 용언적 형태에 쓰이는 토

‘體言의 용언적인 範疇를 가지기 위하여서는 먼저 體言에 용언적 성격을 주는 접미사 <이>에 의한 형태를 취한다.’하고 이를 名詞(體言)의 용언적 형태(또는 용언형)라 하며 이 용언적 형태는 형용사와 상응하는 종결형 또는 비종결형의 토가 쓰인다고 했다.<p.180>

ㄱ) 종결형토 : 라, 람,로구나,로군,로다,로소이다,로세,러다,러니,런가,르세,울시다,요

ㄴ) 비종결형토 : 람시고,로되,라

3. 도움토

a. 어떤 형태밑에 붙어서 그 형태의 의미를 더 정밀 보충하여 주는 것들

- 다가,다,서,써,그려....

- b. 자체가 문장론적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것들
 - 더러, 깨, 한테, 게서, 랑, 하고, 처럼, 보다, 마는....
- c. 이야기 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행동, 상태 또는 표식)을
 그와 동일한 계열에 있는 유사한 대상에 일정하게 관련
 시키는 토.
 - 도, 나, 나마, 는(은), 라도, 마다, 마저, 만, 부터, 서건, 조차, 까지,
 야, 야말로....

(나) 動詞의 형태

1. 종결형 : 文末에 오는 '動詞의 형태'로서 반드시 述語가 되며 따라서 動詞의 '종결술어형'이라고도 한다. 종결형은 계칭, 식, 법, 시칭, 존칭 및 상의 文法的 範疇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칭, 식 및 법은 '어간'뒤에 오는 토에 의하여, 시칭, 존칭 및 상은 '어근'뒤에 오는 접미사에 의하여 표현된다 하여 先語末語尾類를 어간형성의 接尾辭로, 그리고 語末語尾를 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分析體系는 특이한 것으로 토를 그 분포특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데 따른 결과라 하겠다.

그런데 문말에서 계칭의 토와 식 및 법을 나타내는 토는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토가 고찰하는 관점에 따라 계칭의 토로도, 식이나 법의 토로도 된다하여 하나의 토가 여러가지 文法範疇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술하는 矛盾을 안게 되었다.

- a. 계칭범주 : 話者와 聽者와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文法的 範疇이며, 여기에는 존대, 하오, 하계, 해라, 반말의 다섯 가지 계칭이 있다.
- ㄱ) 존대 : ㅂ니다(읍니다), 습니다. 나이다. 외다, ㅂ니까(읍니까), 습니까, 소서, ㅂ시다(읍시다)

ㄴ) 하오 : (으)오, 소, 구려, 비시다

ㄷ) 하계 : 네, ㄹ세, 군, 는가, ㄹ가, 계, 세

ㄹ) 해라 : ㄴ(는)다, 마, 구나, 느나, 나, 니, ㄹ라, 아(어, 여)라, 러므나, 려, 자

ㅁ) 반말 : 아(어, 여), 지

b. 식의 範疇와 법의 範疇 : 식이란 言語행위의 기능이란 관점에서 화자와 청자사이에 설정되는 여러가지 관계를 나타내는 文法的 範疇라는 것이며 이러한 식에는 서술식, 의문식, 명령식, 그리고 권유식의 종결형이 있다고 한다. 식을 나타내는 종결토는 앞에서 말했듯이 계칭의 토와 같으나 이것을 식의 範疇의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네 가지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ㄱ) 서술식 : 일정한 사실에 대한 인정, 전달을 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의 範疇에 따라 細分하고 있다. 법은 화자가 설정하는 행동(또는 상태)과 현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文法的 範疇라는 것이고 이것은 문장에서 양태성을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의 하나다.

i) 직설법

① 단순한 확인을 나타내는 토: 비니다(읍니다), 습니다, 나이다, 노이다, 외다, 오, 소, 네, 다, 노라, 아(어, 여)

② 확인을 강조하면서 나타내는 토: 비넌다, 느니, 것다, 렸다 (으렷다), 느니라, 니라

(으니라),지

- ③ 확인과 함께 감탄을 나타내는 토: 군,구려,구나,구면,
누나,누만,걸,다니,다구,
아라(어라,여라),도다

ii) 가능법

- ①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토: 리다(으리다),리(으리),
ㅁ세,리라,마,ㄹ게(을게),
ㄹ걸,지
- ② 추측을 나타내는 토: ㄹ지라,ㄹ지니라,ㄹ지어다.ㄹ진저,
리다(으리다),리(으리),리라,리로다,
ㄹ러라,ㄹ레라, ㄹ라,ㄹ세라,지

ㄴ) 의문식

- i) 직설법 : ㅂ니까,습니까,나йка,는가,나,는가,게,노,느냐,
느뇨,니,감,납,담
- ii) 가능법 : 리까,ㄹ가(을가),ㄹ거나,ㄹ런가,ㄹ고(을고),
ㄹ손가(을손가),랴(으랴), 리(으리),ㄹ소나
(을소냐), 는지,ㄹ지(을지)

ㄷ) 명령식 : 소서(으소서),ㅂ시오,세요,게,게나,구려,라구,라
(으라),아라(어라,여라),거라,너라,려므나,렸다.

ㄹ) 권유식 : ㅂ시다(읍시다),세,세나,ㅂ세(읍세),라구,자,
자꾸나

c. 시칭의 範疇 : 시칭이란 행동의 순간과 담화의 순간과의 관계
를 나타내는 文法範疇.

ㄱ) 현재시칭

- i) 현재형 : 動詞의 어근과 종결토 사이에 아무런 시칭접미
사도 끼이지 않는다. 다만 일부의 종결토(다,
구나,군,구려,구면,도다)에 한하여 ‘ㄴ’또는 ‘는’이

끼인다

ㄴ) 과거시칭

i) 과거형 : -았-(-었-,-였-)

ii) 선과거형 : -았었-(-었었-,-였었-)

ㄷ) 미래시칭

i) 미래형 : -겠-

d. 존칭의 範疇 : 존칭이란, 動詞로써 표현된 행동의 주체에 대한 話者의 존칭의 뜻을 나타내는 文法的 範疇.

ㄱ) 존칭의 접미사 : -시-(-으시-)

e. 상의 範疇 : 動詞의 형태로써 표현된 행동과 행동의 주체 및 객체(객체가 있는 경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文法적 範疇.

ㄱ) 능동상

ㄴ) 사역상

ㄷ) 피동상

2. 접속형 : 문장의 접속술어 또는 상황어로 되거나 합성술어에서 앞부분에 오는 성원으로 되는 動詞의 형태.

a. 합동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토 : 고,며,는데,는바,되,니,노니,
더니,다가,거니와,려니와
(나니,거니)b. 대립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토 : 나,나마,지만,건만,런만,아도
(는데,되,니,다가,거니와,
려니와,더니,면서,거늘,아야)c. 분리적(선택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토 : 거나,건,든지,든가,
든,나(거니)d. 시간적 관계(동시성,선행성등)를 나타내는 접속토 : 자,면서,
고서(며,고,아)

e. 행동의 방식, 정도를 나타내는 접속토 : 아, 아서, 게, 도록, 르수록,
르뿐더러 (고, 르세, 며,
면서)

f. 원인, 근거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토 : 므로, 니까, 니즉,
는지라, 길래, 거늘, 매,
르새, 건대, 나니, 느니,
거니(니, 더니, 자, 아,
아서, 거든, 면)

g. 목적, 의도를 나타내는 접속토 : 러, 러, 고저

h.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토 : 면, 거든, 아야, 르진대, 던들

i.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토 : 르지언정, 르망정, 르지라도, 더라도,
라도, 니들, 앓자(아도)

j. 사상이나 담화의 내용을 나타내는 접속토 : 려니, 거니(느니,
고)

3. 규정형 : 動詞가 그 뒤에 오는 名詞(수사, 대명사)에 대하여 규정
하는 관계에 있으며, 반드시 그에 대하여 규정어로 됨을
나타내는 動詞의 형태

a. 규정형의 토 : 는, 니(은), 던, 르(을)

4. 체언형 : 행동에 대한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개념을 주는 動詞의
형태

a. 제 1체언형 : 니(음)

b. 제 2체언형 : 기

c. 제 3체언형 : 지

이상 「문법」(1960)이 분류 기술한 토의 概要를 살폈다. 이를 다시 정
리하여 그 體系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명사의 형태	격토	주격,속격,대격,여.위격,조격,구격,호격,절대격			
	용언형태	종결형			
		비종결형			
도움토					
동사의 형태	종결형	계칭	존대,하오,하계,해라,반말		
		식과법	서술식	직설법	가능법
			의문식	직설법	가능법
			명령식		
			권유식		
		시칭	현재	현재형	
			과거	과거형	
			미래	선과거형 미래형	
		존칭	존 칭		
		상	능동		
	사동				
	피동				
	접속형	합동			
		대립			
		분리			
		시간			
		행동방식			
		원인			
		목적.의도			
		조건			
양보					
사상내용					
규정형					
체인형	제 1체인형				
	제 2체인형				
	제 3체인형				

III. 「조선문화어문법규범」

「조선문화어문법규범」⁹⁾은 그간의 規範文法을 비판하여 '지난 날 낡은 <規範文法>들은 흔히 言語的 體系와 그 실현을 완전한 객관에 놓고 분석하여 구성요소들과 호상관계를 밝히고 정리·體系化 하였으며, 그러므로써 言語구조와 言語사용을 온전히 떼어 놓고 言語構造 그 자체의 순수 객관주의적인 해명에만 몰두하였다.'(p.6)고 하면서 「규범」(1976)이 취할 입장은 '言語構造를 分析 정리하되 言語構造를 言語使用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취급하고 言語的 구성요소들의 실현규칙도 言語使用의 견지에 서서 밝히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규범」(1976)의 基本性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니와 나아가 「言語規範은 언제나 言語現實을 전형화하여 모든 言語實踐에 나타나는 일반 보편적인 것만을, 그것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만을 올린다」(p.9)고 하여 그 내용범위를 제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北韓의 言語觀이나 言語政策으로 보아 당연한 귀결로 받아 들여진다.

(1) 單語와 형태부

「單語」와 「형태부」에 대한 정의는 「문법」(1960)과 달라진 것이 없다. 즉 單語는 '어떠한 뜻을 가진 말소리의 덩어리로서 문장구조속에서 어휘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일정하게 구획되는 언어의 기본단위'로, 그리고 형태부는 '단어에서 어휘적 또는 문법적 뜻의 덩어리로 나누어지는 가장 작은 단위'로 규정하며 형태부는 다시

1) 말뿌리(어근)¹⁰⁾와

9) 이것은 1976년에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편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에서 刊行했으며, 이것을 1977년에 東京 학우서방에서 번각 발행하였다. 여기서는 후자의 것을 대본으로 한다. 이후 「규범」(1976)으로 略稱한다.

10) 「규범」(1976)은 「문법」(1960)에서 사용한 漢字語 용어의 많은 것들을 새로운 단

2) 덧붙이(接辭)로 나누고 이 가운데 덧붙이를

ㄱ) 앞붙이(接頭辭)

ㄴ) 뒤붙이(接尾辭)

로 분류하는 것도 물론 일치한다. 그리고 말뿌리와 덧붙이를 합친 것을 줄기(語幹)로 잡는 것도 같으며 특히 토는 單語에서 文法的인 뜻을 나타내는 형태부가 되고 언제나 줄기뒤에 붙는다는 分布體系에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單語構成의 形態論的인 분석원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다만 용어 가운데 많은 부분이 고유어로 바뀌었을 뿐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면밀한 考察이 있어야 하겠다.

(2) 품 사

品詞의 정의 및 분류기준은 「문법」(1960)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분류기준에 있어 「문법」(1960)이 4개 기준을 설정한 데 반하여 「규범」(1976)은 3개를 내세웠는데, 그것은 前者가 '문장론적 기능의 측면'을 따로 설정하는데 대하여 後者는 그것을 '單語의 文法的 특성'속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분류의 결과도 같게 나타났으니, 즉 ① 명사 ② 수사 ③ 대명사 ④ 동사 ⑤ 형용사 ⑥ 관형사 ⑦ 부사 ⑧ 감동사의 8品詞가 그것이다.

그렇진대 「문법」(1960)이 品詞문제를 둘러싸고 제기했던 문제들은 그간의 연구에 있어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토를 보조적 品詞로 인정하는 문제, 아니면 도움토만 독립品詞로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접두사 및 후치사를 따로 설정하는

어만들기에 따라 고유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도 변화의 하나라 하겠다.

문제, 動詞과 형용사를 합하여 하나의 品詞로 묶는 문제 그리고 의성-의태어를 하나의 品詞로 설정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결과적으로는 어느 것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각 品詞에 대한 내용기술의 방법과 내용구성의 體系에 있어 「문법」(1960)과 「규범」(1976)은 크게 다르다. 가령 動詞의 경우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문법」(1960) : 동사 ; ○ 품사로서의 동사의 의미
- 타동사와 자동사
 - 동사의 형태
 - 동사의 종결형
 - 종결형의 문법적 범주
 - . 계칭의 범주
 - . 식의 범주와 법의 범주
 - . 시칭의 범주
 - . 존칭의 범주
 - . 상의 범주
 - 동사의 접속형
 - 접속형의 문법적 범주
 - 동사의 규정형
 - 규정형의 문법적 범주
 - . 시칭의 범주
 - . 존칭의 범주
 - . 상의 범주
 - 동사의 체언형
 - 체언형의 문법적 범주
 - . 격의 범주
 - . 시칭의 범주

존칭의 범주와 상의 범주

- 동사에 나타나는 합성토
- 동사의 문장론적 기능
- 동사의 단어조성

나. 「규범」(1976) : 동사 ; 1. 동사란 무엇인가?

2. 동사의 갈래
3. 동사 만들기
4. 동사의 쓰임

세부적인 내용상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우선 내용구성에 있어 이들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문법」(1960)에 비하여 「규범」(1976)이 내용을 概括적으로 간결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이지만 그보다도 「動詞의 형태」 즉 活用部分이 완전히 排除된 사실이다.

形態論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品詞의 '문법적 형태'를 빼버리고서는 文法自體가 成立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다만 品詞論內에 이것을 넣지 않고 따로 '토'에 관한 독립된 장을 두어 거기서 모든 單語의 형태와 토를 分析 기술하는 것으로 개편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각 品詞別로 문법적 형태가 기술되었던 부분을 한데 모아 '3장 토'에서 집중적으로 분류 기술함으로써 오히려 상대적으로 토의 形態論적인 비중을 上向 조정하려 한 취지가 엿보인다. 배당된 내용의 분량만 보더라도 '2장 品詞'가 76쪽인데 비하여 '3장 토'가 123쪽이나 되어 역시 形態論의 중심부를 토에 대한 문제에 두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게 한다.

(3) 토

각 品詞別로 분산하여 기술한 「문법」(1960)과는 달리 '3장 토'를 별

도로 설치하여 토를 한데 모아 體系化 시킨 것이 특징이다. 토에 대한 규정은 그렇다치고 토의 갈래에 대상토와 풀이토를 두어 대체로 體言의 曲用語尾와 용언의 活用語尾에 대응하는 분류를 1차적으로 하였다. 이것은 대상성과 서술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토는 이러한 기준외에도 그것이 놓이는 分布性을 기준으로 하여 자리토와 끼움토로 나뉘다 하였으니, 그것은 대체로 語末語尾와 先語末語尾에 대응하는 분류다. 이 분류법은 「문법」(1960)에서는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크게 달라진 것중의 하나다.

공용과 활용의 토의 분류를 보면 이른바 대상토는 격토와 복수토(들)로, 그리고 풀이토는 맺음토, 이음토, 엮음토, 꾸밈토 등으로 분류하였다.

격토는 「문법」(1960)의 기술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나, 「문법」(1960)에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던 '복수토'를 따로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이 복수토는 '들'로 표시되는 대상토이며 끼움토라하여 분포적으로 격토와는 다른 점을 지적하였다.

맺음토는 풀이토의 하나이며 자리토라 하였다. 자리토란 끼움토와의 상대적 관계로 쓰인 용어로 文末과 語末의 자리에 나타나는 토를 이르며 끼움토는 이른바 상, 존경, 시간 등을 나타내는 토로서 어간과 자리토 사이에 끼워지는 자리에 나타나는 先語末語尾를 이르는 용어다.

따라서 「규범」(1976)의 맺음토는 「문법」(1960)에서 [종결형]¹¹⁾속에 포함시켰던 [시칭] [존칭] [상]의 토를 제외한, 다시 말해서 상, 존경, 시간을 나타내는 끼움토를 제외한 나머지의 문말, 語末語尾를 지칭한다. 그리하여 맺음토의 큰 갈래를

- 1) 알림을 나타내는 맺음토 [서술식]
- 2) 물음을 나타내는 맺음토 [의문식]

11) 「문법」(1960)과 「규범」(1976)의 용어법은 그 본질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前者가 전통적인 漢字語 용어를 답습한 데 반하여 後者는 이를 고유어 용어로 바꿔 쓰고 있다. []로 표시된 용어는 前者, 즉 「문법」(1960)의 용어를 들어 보인 것이다.

3) 추김을 나타내는 맺음토 [권유식]

4) 시킴을 나타내는 맺음토 [명령식]

로 나누었으니 이것은 대체로 「문법」(1960)의 體系와 일치한다.

다음 이음토는 [접속형], 앞음토는 [규정형] 그리고 바꿈토는 [체언형]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분류 체계에 있어 역시 큰 변동이 없다.

- 자리토와 끼움토 -

토를 자리토와 끼움토로 분류한 것은 「규범」(1976)의 토 분류체계이며, 「문법」(1960)에는 없던 일이다. 모든 單語形態에서 어간에 접미되는 모든 형태부를 토로 규정함으로써 토에 先行하는 [상, 존칭, 시칭, 체언형성접미사]를 [어간의 형태조성접미사]라 하여 어간형성의 접미사로 처리했던 것이 「문법」(1960)의 토 體系였다면, 「규범」(1976)은 이 形態論的인 모순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하여 [상, 존칭, 시칭접미사]를 어간형태조성의 접미사와는 다른 범주의 형태부로 分析하여 여기서 제외, 토로 처리하게 되었고 이것을 어말과 문말의 토와 구분하는 분류의 기준에 따라 자리토와 끼움토로 나누게 되었다.

결국 [상, 존칭, 시칭접미사]로 기술되었던 일련의 형태부는 어간형태조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에서 문법적인 기능요소인 토의 範疇로 파악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토를 분포의 특성에 기준하여 나눌 필요가 생겼으며 그것이 자리토와 끼움토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하여 자리토는 기왕의 토 즉 어말과 문말의 [형태부]를, 그리고 끼움토는 대상토중 복수토와 풀이토중 상토, 존경토, 시간토를 합친 것들, 즉 어간과 자리토 사이에 끼워지는 토를 지칭하게 되었다.

이것은 토문법의 體系가 크게 달라진 부분으로 「문법」(1960)에서 제기한 課題의 하나를 발전적으로 해결한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이다.